

建築法中 改正法律(案)

◆建設部 당국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를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정부분은 다음과 같다. ◆

建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建築物”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附隨되는 施設, 公衆의 用에 供하는 觀覽施設,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 公演場, 店舖, 倉庫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工作物을 말한다. 다만 鐵道 또는 軌道の 線路敷地 내에 있는 運轉保安施設, 跨線橋, 푸레트홈의 지붕과 당해 鐵道 또는 軌道事業用給水, 給炭, 給油施設을 제외한다.

第2條第3號中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供하는 것”을 말한다.”를 “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을 말한다.”로 한다.

第2條第4號中 “電氣” 다음에 “電話”를 挿入하고, “其他 이와 類似한”을, “國旗揭揚臺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으로 한다.

第2條第12號中 “新築·増築·改築”을 “新築·増築·改築·再築”으로 한다.

第2條第16號中 “第17條”를 削除한다.

第2條第17號中 “第12條1項 또는 第24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4條第1項中 “權限의 一部를” 다음에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을 挿入한다.

第5條中 “主要變更”을 “重要變更”으로 하고, 第22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6條(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 ①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1級建築士 또는 建築士가 아니면 設計할 수 없는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建築士의 設計에 의하여야 한다.

②建築主가 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建築物 중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이상의 建築物의 建築,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의 工事を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建築士로 工事監理者를 定하여야 한다.

第12條(防火地區의 區域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構造制限) ①市長郡守는 防火地區의 市街地로서 防火上 특히 필요한 때에는 區域을 指定, 公告하고 당해

區域 안에서 建築物의 構造를 制限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構造制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 및 第14條를 削除한다.

第20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3項을 削除한다.

①下水道法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場의 處理區域안 의 便所는 水洗式으로 하여야 한다.

第22條의 2(駐車場의 設置) ①特殊建築物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이상의 建築物의 新築, 改築(一部分의 改築을 제외한다) 또는 再築을 하고자 할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特殊 建築物을 増築하고자 할 때에 그 増築하는 部分과 既存建築物과 의 延面積의 合計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이상인 때에는 또한 같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駐車場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面積 이상이어야 한다.

第22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 3(地下層의 設置) ①2層이상이거나 200平方미터 이상의 建築物을 新築하고자 할 때에는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을 適用할 行政區域 및 建築物의 種類, 規模別地下層의 規模, 構造, 設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4條中 “防火區劃, 消火設備 및 避雷設備의 設置 및 構造, 給水, 排水, 其他의 配管設備의 工法과 狹口, 굴뚝 및 昇降機의”를 “防火區劃의 構造와 建築設備의 設置 및”으로 한다.

第28條中 “通行에”를 “交通, 防火, 衛生上”으로 한다. 第32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7項을 第9項으로 하며, 第4項 내지 第6項을 第5項 내지 第7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4項 및 第8項을 다음과 같이 設新한다.

③工業地域안에서는 學校, 病院, 劇場, 映畫館, 演藝場, 料理店 또는 旅館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은 建築할 수 없다. 다만 市長, 郡守가 工業의 便益 또는 公益上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建築物과 工場의 運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建築物로서, 工場地內에

建築하는 建築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工業地域안의 專用工業地域에서는 工場과 工場에 附隨되는 汚物處理場, 貯藏庫, 倉庫 기타 工場의 運營管理에 필요한 建築物이 아니면 建築할 수 없다. 다만 市長, 郡守가 工業의 便益 또는 公益上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1項 내지 前項의 地域이외의 地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建築의 制限에 關於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3條 (地區안에서의 建築物) 風致地區, 美觀地區, 教育地區 및 기타 地區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建築의 制限에 關於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범위 안에서 當해 市 또는 郡의 條例로 定한다.

第38條를 削除한다.

第39條 (建築面積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 ①建築物의 建築面積은 商業地區에 在於서는 垜地面積의 10分의 7을, 綠地地域에 在於서는 垜地面積의 10分의 2를, 기타의 地域 또는 地域의 指定이 없는 區域에 在於서는 垜地面積의 10分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築物에 在於서는 각각 다음 의 比率에 의한다.

1. 商業地域안의 防火地區에 있는 建築物로서 그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것은 垜地面積의 10分8의(街路의 모퉁이에 있는 垜地 또는 이에 準하는 垜地로서 市長・郡守가 指定하는 區域안에서는 10分의 9) 이내.

2. 商業地域외의 防火地區에 있는 建築物로서 그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것은 地面積의 10分의 7(街路 모퉁이에 있는 垜地 또는 이에 準하는 垜地로서 市長, 郡守가 指定하는 區域안에서는 10分의 8)이내.

②防火地區 이외의 地區에 在於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建築面積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을 前項 本文에 規定하는 比率의 범위 안에서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第39條의 2 (垜地面積의 最少限度) ①建築物을 新築 또는 再築하고자 할 때에는 그 垜地面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面積 以上 이어야 한다.

②市長, 郡守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在於서는 垜地面積의 最小限度를 前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面積 以上으로 定할 수 있다.

③市長, 郡守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垜地面積의 最小限度와 그 適用區域을 定한 때에는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第40條(住居地域에 在於서의 建築物 높이의 限度) 住居地域에 在於서의 建築物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長, 郡守가 建築物의 周圍에 公園, 廣場, 道路 기타의 空地가 있어서 通行・防火 및 衛生上 支障이 없다고 인정하여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條第1項中 “水平距離나 그 道路의 幅의 1.5배에 8미터를 加한”을 “水平距離의 1.5배의”로 하고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市長, 郡守가 商業地域안의 防火地區안에서 土地利用上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指定, 公告한 區域안의 建築物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市長, 郡守 또는 그 委任이나 命令을 받은 公務員은 建築物의 所有者, 管理者, 建築主 또는 工事監理者에게 필요한 資料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建築物垜地 또는 建築工事場에 出入하여 當해 建築物, 建築設備 또는 建築工事に 關係가 있는 物件을 檢査하거나 필요한 試驗을 할 수 있다.

第45條中 第1項第1號를 削除하고 第3號中 “第7項”을 “第9項”으로 하며 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3項中 “및 第38條”를 削除한다.

4. 第12條第1項 및 第41條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區域의 指定과 第39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垜地面積의 最少限度 및 그 適用區域의 決定.

第53條의 5 (公害防止) 市長, 郡守가 公害防止法에 의한 公害防止區域으로 指定된 地域안에서 公害防止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이나 事業場에 關한 建築許可를 할 때에는 公害防止措置를 條件으로 부쳐야 한다.

第55條中 第1號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2號中 “第9條 乃至 第17條”를 “第9條 내지 第11條, 第15條 내지 第17條”로, “第20條 第1項 및 第2項, 第21條, 第22條”를 “第20條 내지 第22條의 3”으로 하며, “또는 第41條의 2 第1項”을 削除하고

1의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를 申訴한다. 第55條第3號中 “第24條”를 “第12條 및 第24條”로 하고, 同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32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의 當해 建築物의 建築主 別表의 1 내지 別表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別表의 1] 住居地域안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1) 別表의 2와 別表의 4에 해당하는 것. 다만 別表의 4 (1)중 1 내지 4 및 12의 物品, 可燃性가스 또는 카바이트의 貯藏 또는 處理에 供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原動機를 使用하는 工場으로서 作業場의 바닥 面積

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3)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1. 容量 10리터이상 30리터 미만의 아세찌랭가스 發生器를 使用하는 金屬工業.

2. 出力의 合계가 0.75킬로와트 미만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塗料의 髹칠.

3. 原動機를 使用하는 2臺이하의 研磨機에 의한 金屬의 乾燥研磨(工具만을 使用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콜크, 에보나이트 또는 合成 樹脂의 粉碎 또는 乾燥研磨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5. 製材, 裁縫機, 需捻糸, 組紐, 縹物, 製袋 또는 즐칼날 세우기로서 出力의 合계가 0.75킬로 와트 이상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6. 印刷, 製針 또는 石材를 조개는 일로서 出力의 合계가 1.5킬로와트 이상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7. 印刷用 平版의 研磨.

8. 糖衣機를 使用하는 菓子の 製造

9. 原動機를 使用하는 水泥製品의 製造.

10. 捻線, 쇠그물의 製造 또는 直線機를 使用하는 金屬線의 加工으로서 出力의 合계가 0.75킬로와트 이상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11. 出力의 合계가 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原動機를 使用하는 製粉.

12. 原動機를 使用하는 魚肉의 練製品의 製造

(4) 바닥 面積의 合계가 50평방미터 이상의 自動車庫(建築物에 附屬하는 것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都市計劃으로 決定된 것을 제외한다)

(5) 演藝場 또는 觀覽場.

(6) 카바레, 舞蹈場 기타 이와 類似한 用에 供하는 建築物.

(7) 倉庫業을 經營하는 倉庫.

[別表의 2] 商業地域안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1) 別表의 4에 해당하는 것.

(2) 原動機를 使用하는 工場으로서 作業場의 바닥面積의 合계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日刊新聞의 印刷所 및 作業場의 바닥面積의 合계가 3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自動車修理工場을 제외한다).

(3)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1. 玩具用普通火工品の 製造.

2. 아세찌랭가스를 使用하는 金屬의 工作(아세찌랭가스發生器의 容積이 30리터 이하의 것 또는 溶解아세찌랭가스를 使用하는 것을 제외한다.)

3. 引火性溶劑를 使用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 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加熱, 加工 또는 機械를 使用하는 加工.

5. 印刷잉크 또는 그림색감의 製造.

6. 出力의 合계가 0.75킬로와트 이상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塗料의 髹칠.

7. 亞黃酸가스를 使用하는 物品의 漂白.

8. 骨炭 기타 動物質炭의 製造.

9. 羽毛類의 洗滌, 染色 또는 漂白.

10. 닝마, 부스럭숨, 휴지, 헌실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의 消毒, 選別, 洗滌 또는 漂白.

11. 製材, 製綿, 古綿의 再製, 起毛, 反毛 또는 벨트의 製造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12. 씨, 쌀, 조개類의 조갯 및 乾燥, 研磨 또는 3臺 이상의 研磨機에 의한 金屬의 乾燥, 研磨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13. 鑛物, 炭石, 土砂, 硫黃, 金屬, 유리, 벽돌, 陶磁器, 씨 또는 조개껍질의 粉碎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14. 덕, 懷爐灰, 또는 煉炭의 製造.

15. 活字 또는 金屬工藝品의 鑄造(印刷所에서의 活字의 鑄造를 제외한다).

16. 기와, 벽돌, 土器, 陶磁器, 人造, 솟돌, 碓 또는 珓瑯, 鐵器의 製造.

17. 유리의 製造 또는 砂吹

18. 動力鏈를 使用하는 金屬의 鏈造.

19. 메디믹스트 콘크리트의 製造 또는 水泥공대의 事後처리하는 것으로서 出力의 合계가 2.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20. 비누의 製造.

21. 魚粉 또는 魚粉을 原料로 하는 飼料의 製造.

[別表의 3] 綠地地域안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

(1) 農業, 林業, 畜産業을 目的으로 당해 地域안의 土地 또는 原材料를 利用하는 業務에 쓰이는 建築物.

(2) 前號의 業務에 從事하는 者の 居主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

(3) 公園, 運動場, 墓地類의 施設에 附屬되는 觀覽席, 休憩所, 脫衣場, 關係事務所, 公衆便所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그 施設의 機能을 다 하는데 필요한 建築物.

(4) 住宅, 日常生活에 必要한 店舖, 寺院, 敎會 기타 이와 類似한 建築物.

(5) 學校, 圖書館, 公會堂, 病院, 託兒所, 養育院 기타 이와 類似한 公益上 필요한 建築物.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후 2月을 경과 한 날부터 施行한다.